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2020년 인권영향평가 용역
최종보고서**

2021. 2.

KMAC

< 목 차 >

I. 과업수행 개요	1
1. 과업수행 범위	2
2. 과업수행 주요내용	3
II. 인권영향평가 지표 고도화	4
1. 인권영향평가 개요	5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최적화	7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9
III. 인권영향평가	11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	13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	17
Appendix	19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20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34

I . 과업수행 개요

1. 과업수행 범위 2

2. 과업수행 주요내용 3

I. 과업수행 개요

1. 과업수행 범위

1)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①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확정

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상의 10개 분야, 158개 지표를 활용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확정

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가. 기관 주요사업 관련자료 분석

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3개 분야, 56개 지표)

2) 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영향평가 프레임워크 마련

② 인권영향평가 실시

가.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근거자료 수집

나. 인권영향평가 실시(KMAC 인권경영 전문위원)

③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3) 인권경영 기관 추진현황 자문

- 인권경영 관련 체계수립 및 실행 자문

4) 인권경영 교육

- (실무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교육(1회)

2. 과업수행 주요내용

과업	주요내용
Kick - o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0. 12. 1 • 인권경영 체계구축 방향성 설정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기관 주요사업 선정 → 학교급식사업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0. 12. 11 • 대상 : 주요사업 담당자 • 목적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근거자료 수집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0. 12. 18 • 대상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담당자 • 목적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지표별 근거자료 수집 교육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0. 12. 24 ~ 28 • 내용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지표별 결과에 따른 기관 개선과제 도출

II . 인권영향평가 지표 고도화

1. 인권영향평가 개요	5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최적화	7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9

II. 인권영향평가

1. 인권영향평가 개요

1) 인권영향평가 추진 배경

- 인권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의 인권실천·점검의무의 핵심기제로 인권경영의 주요내용임
-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함
- 본 평가는 '19년에 이어 공사의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체크리스트를 통한 두 번째 인권영향평가임
- 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기관 내 인권경영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기관운영, 법규,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적용이 필요함

2) 인권영향평가 실시 개요

- 평가범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기관활동 전반을 보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함
- 평가대상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등 포괄적 기업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이해관계자에게 영향력이 큰 기관의 대표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함
- 수행 프로세스

①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가. 인권경영 상 인권영향평가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기관분석, 지표설계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함
- 나. 인권영향평가 대상/평가 주체 등의 평가 실행계획 수립, 교육계획 등을 수립함

②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근거자료 수집 교육

가.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증빙자료 제출을 위한 교육 실시

③ 인권영향평가 평가자료 작성

가.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근거자료 작성을 각 부서에 요청

나. 지표별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근거자료를 작성

④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가. 지표별 담당부서에서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나. 용역사는 담당부서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⑤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실시

⑥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가.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최고경영진에게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나. 인권침해 방지조치를 수립하여 시행

3)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구성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을 기반으로 최적화를 실시함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외부전문가 주도하에 진행 된 담당자 인터뷰, 기관분석,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개발함

4) 인권영향평가 방법

<인권영향평가 실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확정	체크리스트별 근거자료 수집	인권영향평가 실시 (KMAC)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인권경영 위원회 심의·의결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최적화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담당부서

구분	평가지표	담당부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총무팀
2	고용상의 비차별	총무팀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총무팀
4	강제노동의 금지	총무팀
5	아동 노동의 금지	총무팀
6	산업안전 보장	총무팀, 안전총괄팀, 시설운영팀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재무팀, 감사실, 전산정보팀
8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건설계획팀, 재무팀, 전산정보팀
9	환경권 보장	환경관리팀, 시설운영팀, 설계관리팀, 안전총괄팀, 총무팀
10	고객인권 보호	농산팀, 수산팀, 전산정보팀
11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총무팀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정

- ①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이 강조되는 바, 이에 맞춰 공사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기관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진단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기반하여 지표를 설정하였음
- ②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리스크(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지표를 추가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고도화를 바탕으로 공사가 가지고 있는 인권리스크를 진단하기 위한 합목적성을 달성하고자 함
- ③ 지표 고도화 관련 근거
 - 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국가인권위원회, ' 18.8)
 - 나.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 20.3)
 - 다. 남녀고용평등법(고용노동부, ' 20.1)
 - 라.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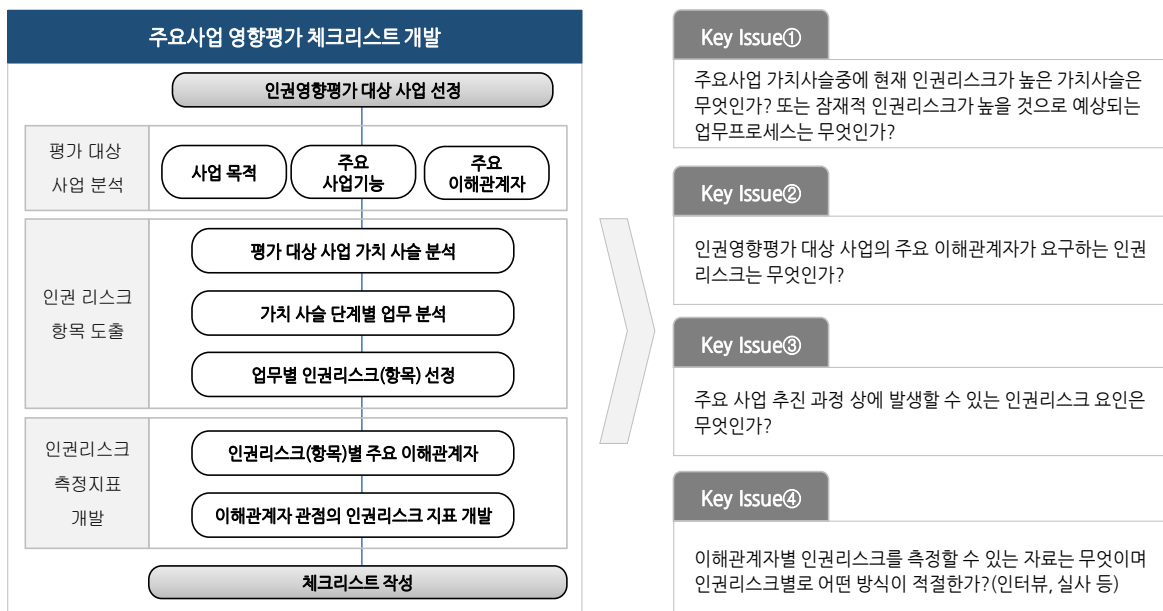
3)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총괄표

이슈		분야 (지표수)	진단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개(30)					
2	고용상의 비차별	4개(17)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개(16)					
4	강제 노동의 금지	2개(11)					
5	아동 노동의 금지	2개(14)					
6	산업안전 보장	4개(17)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3개(10)					
8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2개(10)					
9	환경권 보장	4개(18)					
10	소비자인권 보호	3개(15)					
11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2개(19)					
합계		31개(177)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1)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Framework

- 주요사업 가치사슬 및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사업 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분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분야별 사업 담당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발굴하여 이를 지표에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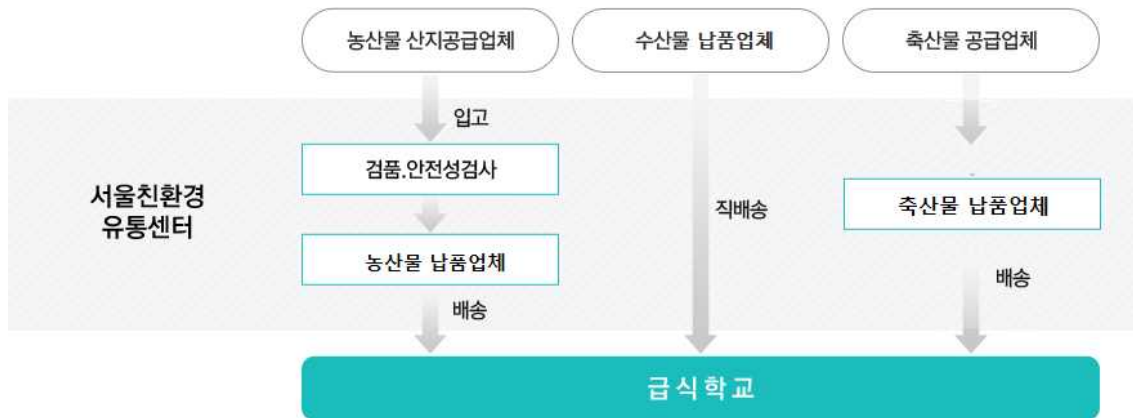


2) 주요사업 분석

① 학교급식사업 운영 체계 분석

- 농산물 : 센터 안전성검사 및 검품 후 배송업체를 통해 학교 공급
 - ▶ 생산자(공급)단체 : 지역 내 계약재배 생산농가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 센터로 입고(물량 집하, 산지 관리)
 - ▶ 배송(납품)업체 : 센터에 입고된 농산물을 생산자단체와 검품·검수 후 학교로 납품(배송 업무, 리콜 기능)

- 축산물 : 배송업체에서 학교 직배송
 - ▶ 배송업체 :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원료육을 가공처리 후 학교에 납품(가공처리, 운송, 전처리, 클레임 처리 등)
- 수산물 : 배송업체에서 학교 직배송
 - ▶ 납품업체 : 학교 발주 사양에 따라 가공 후 직배송
- 친환경유통센터는 원료, 가공장, 배송차량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 점검과 관리 수행
- 운영체계도



② 가치사슬 분석을 통한 인권리스크 항목 도출

가. 수급

- 생산자(공급)업체와 선정 과정의 공평성, 투명성, 객관성 유지
- 생산자(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공정성, 투명성 유지
- 생산자(공급)업체와의 대금 지급 과정에서의 재산권 보호
- 생산자(공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안전, 안정적인 공급 관리의 의무

나. 안전성검사(농산물만 해당)

- 철저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바탕으로 건강권, 생명권 보호
-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납품업체의 재산권 보호

-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결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정보접근성 제고

다. 배송

- 배송(납품)업체와 선정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유지
- 배송(납품)업체와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공정성, 투명성 유지
- 배송(납품)업체와의 대금 지급 과정에서의 재산권 보호
- 배송(납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안전, 안정적인 공급 관리의 의무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 ① 사업 추진 시 가치사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권리스크를 도출
- ② 도출된 가치사슬별 인권리스크에 따라 업무별 인권리스크 파악
- ③ 인권리스크수준 파악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성 매칭
- ④ 이해관계자 유형의 다양성과 집단의 크기를 검토하여 이해관계자 민감도 파악
- ⑤ 인권리스크와 이해관계자의 매칭을 기반으로 지표 개발

4)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총괄표

분야	프로세스	진단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농산물	수급					
	안전성검사					
	배송					
축산물	수급					
	배송					
수산물	직배송					
합 계						

Ⅲ. 인권영향평가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	13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	17

Ⅲ. 인권영향평가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¹⁾

번호	이슈	진단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1	8	1	-	-
2	고용상의 비차별	14	-	-	-	3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4	-	-	-	2
4	강제 노동의 금지	8	-	-	-	3
5	아동노동의 금지	4	-	-	-	10
6	산업안전 보장	16	1	-	-	-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	-	-	-	5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4	-	-	-	6
9	환경권 보장	16	-	-	1	1
10	소비자인권 보호	15	-	-	-	-
11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19	-	-	-	-
합 계		136	9	1	1	30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안)

① 종합 의견

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인권경영 실행에 대하여 진단할 수 있도록 규범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음

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2018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권고하고 있는 10개 분야, 158개 지표를 바탕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 지표별 결과 별첨

으로 11개 분야, 177개 지표로 고도화를 실시하였음

- 다.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 ‘예’로 진단되어 적절하게 인권보호 및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환경권 보장에 대한 일부 지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됨
- 라. 분야1의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에서는 지난 ‘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도입 권고에 따라 적절하게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온 점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 마. 분야2, 3, 4의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분야에서는 인권리스크가 진단되지 않았으며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와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준수하여 인권경영의 견지하에 적절히 기관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바. 분야5의 아동노동의 금지 분야에서도 인권리스크가 진단되지 않았으며, 이는 아동노동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희박한 공공기관의 특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음
- 사. 분야 6은 임신부 및 장애인 보호에 대한 항목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지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권리스크가 진단되지 않았음
- 아. 분야 7, 8의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에서도 체크리스트에 기반하여 진단한 결과 인권리스크가 도출되지 않았음
- 자. 분야9 환경권 보장의 경우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보완될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인권리스크가 진단되지 않았음
- 차. 분야 10 소비자 인권보호 분야에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기관에서는 투명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 카. 분야 11의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분야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적인 요소를 반영한 신규 지표이며, 모든 지표에서 인권리스크가 진단되지 않음

② 개선과제(안)

가. 분야1의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에서는 5개 지표에 대하여 보완필요, 1개 지표에 대하여 아니오로 진단되었으며 해당 지표에 대한 개선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의 인권정책 선언문은 일반적인 인권존중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향후 기관의 특색과 주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선언문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1년도에 선언문의 재검토 및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함
- 기관은 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비하여 인권 옴부즈만이나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에 대해서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제절차를 재점검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의 원상회복을 위해 구제절차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기에 구제절차의 전반적인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됨

나. 분야6의 산업안전 보장에서 임산부 휴게실 설치 및 운영,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보완등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됨

다. 분야9의 환경권 보장에서는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항목의 1개 지표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음

- 기관의 환경권 보장에 대한 다양한 노력 중, 환경과 관련하여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됨

③ 지표별 개선 의견

분야	항목	지표번호 ²⁾	항목별 개선 의견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선언	1-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인권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기관의 내·외부 환경변화에 맞춰 인권정책 선언의 재검토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준수 모니터링을 위하여 옴부즈만 운영 또는 정기적인 인권 실태조사 등이 필요함
	구제절차 마련	1-25, 1-26, 1-27, 1-28, 1-29,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다양한 구제절차와는 별도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도 제공해야 함 • 구제절차 제공시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관련 규범에 근거를 두어야 함 • 인권경영상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을 위한 조직, 운영체계, 매뉴얼 등의 보완이 필요함
산업안전 보장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 휴게실 설치 및 운영,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근로환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등을 체크하여 보완해야 함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

1)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³⁾

분야	프로세스	진단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농산물	수급	9	-	-	-	-
	안전성검사	4	-	-	-	-
	배송	11	-	-	-	-
축산물	수급	9	-	-	-	-
	배송	10	-	1	-	-
수산물	직배송	11	-	1	-	-
합 계		54	0	2	0	0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안)

① 종합 의견

- 가.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 ‘학교급식사업’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기관 맞춤형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함
- 나. 사업 특성상 먹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권, 안전권, 생명권 등 다양하고 민감한 인권 이슈사항을 진단 할 필요가 있음
- 다. 공사는 지속적인 사업의 개선과 관리 고도화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권적 리스크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인권 리스크가 진단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라. 분야1의 농산물에 대한 24개 지표에 대하여 모든 지표가 ‘예’로 진단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 지표별 결과 별첨

되었으며, 이는 농산물 수급, 안전성검사, 배송에 이르기 까지 학교급식의 전 과정에서 인권리스크 없이 우수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마. 다만, 축산물과 수산물 분야에서는 배송 항목에서 각 1개의 지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나머지 수급, 배송 항목의 모든 지표에 대하여 인권리스크가 도출되지 않았음

바.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제공이라는 까다로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치사슬에서 인권적인 리스크가 진단되지 않은 점은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음

② 개선과제(안)

가. 축산물 분야에서는 학교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 리콜등이 발생하는 경우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공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됨

나. 수산물 분야에서도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납품된 물품에 대한 리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③ 지표별 개선 의견

분야	항목	지표번호 ⁴⁾	항목별 개선 의견
축산물	배송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된 축산물에 대하여 학교의 클레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리콜이 필요한 경우 이에 빠르게 대응하고 공유·전파할 수 있도록 공사 차원에서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해야 함
수산물	배송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된 수산물에 대하여 학교의 클레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리콜이 필요한 경우 이에 빠르게 대응하고 공유·전파할 수 있도록 공사 차원에서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해야 함

4) 별첨-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참조

Appendix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20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34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분야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미응답		
인권준수정책선언	1	기관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V				
	2	인권정책선언은 기관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V				
	3	기관의 인권정책선언은 기관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V				
	4	기관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기관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V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인권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V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V		향후 기관의 내·외부 환경변화에 맞춰 인권정책 선언의 재검토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함('21년 재검토 예정)
소 계		4	1	1			
인권영향평가정기적실시	7	기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V				
	8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V				
	9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기관 내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V				
	10	기관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V				
	11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V				
	12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V				
소 계		6					
인권경영제도화를위한필요조치	13	기관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V				
	14	기관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V				
	15	기관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V			인권준수 모니터링을 위하여 옴부즈만 운영 또는 정기적인 인권 실태조사 등이 필요함
	16	기관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V				
	17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V				
소 계		4	1				
인권경영성과	18	기관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V				
	19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V				
	20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V				

	21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V					
	22	보고는 기관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V					
	23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V					
	24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V					
소 계			7					
구제절차마련	25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V					기존의 다양한 구제절차와는 별도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도 제공해야 함
	26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V					구제절차 제공시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관련 규범에 근거를 두어야 함
	27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V					
	28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V					인권경영상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을 위한 조직, 운영체계, 매뉴얼 등의 보완이 필요함
	29	피해자가 기관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V					
	30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V					
소 계			6					
합 계			21	8	1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미응답		
고용상비차별	1	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V				
	2	기관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V				
	3	기관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4	기관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5	기관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소 계		5					
고용상남녀차별	6	기관은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V				
	7	기관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V				
	8	기관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9	기관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V				
	10	기관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11	기관은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V				
소 계		6					
비정규직근로자비차별	12	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V				
	13	기관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기관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V				
	14	기관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한다.	V				
소 계		3					
외국인근로자비차별	15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V	
	16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V	
	17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자회사, 지사 등)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V	
소 계						3	
합 계		14				3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	기관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V			
	2	기관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V			
	3	기관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근로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V			
	4	기관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V			
소 계		4				
노동조합활동불이익처우금지	5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V			
	6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V			
	7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V			
	8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V			
	9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V			
소 계		5				
단체교섭보장및성실한이행	10	기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V			
	11	기관은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V			
	12	기관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V			
	13	기관은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관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V			
	14	기관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V			
소 계		5				
노동조합부재시대안적조치	15	기관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기관은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V
	16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V
소 계					2	
합 계		14			2	

▶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강제 노동 금지	1	기관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V				
	2	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V				
	3	기관은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V				
	4	기관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V				
	5	기관은 근로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V				
	6	기관은 근로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는 실시하지 않는다.					V
	7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V				
	8	근로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기관을 그만둘 수 있다.	V				
소 계		7				1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 노동 예방	9	기관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V
	10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V				
	11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V
소 계		1				2	
합 계		8				3	

▶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아	정보미달	
연소자고용금지	1	기관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V			
	2	기관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V
	3	기관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V			
	4	기관은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V			
	5	기관은 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V			
	6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V
소 계		4			2	
연소자고용을알게된경우의조치	7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V
	8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한 근로계약을 작성한다.				V
	9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V
	10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V
	11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V
	12	기관은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V
	13	기관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V
14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V	
소 계					8	
합 계		4			10	

▶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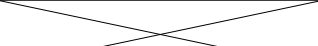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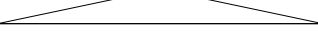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작업상안전	1	기관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V			
	2	기관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V			
	3	기관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V			
	4	기관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V			
	5	기관은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V			
소 계		5				
임산부및장애인등보호	6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V			임산부 휴게실 설치 및 운영,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근로환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등을 체크하여 보완해야 함
	7	기관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V			
	8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V			
	9	장애인들이 기관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V			
소 계		3	1			
필수장비제공및교육실시등	10	기관은 근로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V			
	11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V			
	12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V			
	13	기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V			
	14	기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V			
소 계		5				
산업재해피해근로자지	15	기관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V			
	16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V			
	17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V			

원										
		소 계	3							
		합 계	16	1						

▶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협력회사등의인권침해예방	1	기관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V				
	2	기관은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V	
	3	기관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V				
	4	기관은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V				
소 계		3				1	
모니터링실시	5	기관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V	
	6	기관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V	
소 계						2	
보안담당직원에의한인권침해방지	7	기관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V				
	8	기관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V				
	9	기관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V	
	10	기관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 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V	
소 계		2				2	
합 계		5				5	

▶ 분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지역주민인권의 존중·보호	1	기관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V	
	2	관련 법령에서 기관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V					
	3	기관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V	
	4	기관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V	
	5	기관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 3자들과 협의를 한다.					V	
	6	기관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V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V	
소 계			1				6	
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8	기관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V					
	9	기관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V					
	10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V					
소 계			3					
합 계			4				6	

▶ 분야 9. 환경권 보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환경경영체제수립및유지	1	기관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V			
	2	기관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V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 점검한다.	V			
	4	기관은 기관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V			
	5	기관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V	(환경관련 담당자 교육 실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함)
소 계		4			1	
환경정보의공개	6	기관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V			
	7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V			
	8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근로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V			
소 계		3				
환경문제에대한예방적접근의원칙	9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V			
	10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V			
	11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V			
	12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V			
	13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책임 보험에 가입하였다	V			
소 계		5				
비상계획수립	14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V			
	15	기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V			
	16	기관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V			
	17	기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V			
	18	기관과 병원 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V
소 계		4			1	
합 계		16			1	1

▶ 분야 10. 소비자인권 보호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공개 미흡		
소비자보호를위한법령준수	1	기관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V				
	2	기관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V				
	3	고객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V				
	4	기관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 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V				
	5	기관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V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V				
소 계		6					
기관의사업추진이상시조치	7	기관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속히 회수(리콜)한다	V				
	8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V				
	9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V				
소 계		3					
소비자사생활준중	10	기관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회사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 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V				
	11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 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V				
	1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V				
	13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V				
	14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V				
	15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V				
소 계		6					
합 계		15					

▶ 분야 11.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답보합	해답없음	
직장내 괴롭힘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위해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동의과정을 거쳤다.	V				
	2	우리 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시행 가능한 피해자 배려 조치(배치전환, 유급휴가 등)가 마련되어 있다.	V				
	3	기관 업무 수행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V				
	4	기관업무 수행 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업무에서 배제 시키지 않는다.	V				
	5	기관 업무 수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지 않는다.	V				
	6	기관 업무 수행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V				
	7	기관 내 상급자의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지시하지 않는다.	V				
	8	기관 내 상급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지 않는다.	V				
	9	기관 내 업무 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행사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	V				
	10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V				
	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담당조직 운영, 홍보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V				
	12	우리 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있다.	V				
	13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V				
소 계		13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14	기관 내 모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한다.	V				
	1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적절한 조치의무(행위자 징계,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등)를 마련했다.	V				
	16	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V				
	17	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 창구를 마련한다.	V				
	18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V				
	19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V				
소 계		6					
합 계		19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분야 1. 농산물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미응답	
수급	1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농산물 공급업체 모집공고는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공개적으로 고지한다.	V				
	2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농산물 공급업체 모집에 입찰참가조건 또는 제한요건을 공정하게 제시한다.	V				
	3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농산물 공급업체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선정한다.	V				
	4	공사는 학교급식사업 농산물 공급업체 선정과정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의 이의제기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V				
	5	공사는 선정된 학교급식사업 농산물 공급업체와의 계약 시, 계약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상호간에 협의에 의한 계약을 실시한다.	V				
	6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농산물 공급업체와의 계약 체결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지 않는다.	V				
	7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농산물 공급가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V				
	8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농산물 공급업체에 대하여 작업장 안전, 위생 등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V				
	9	공사는 학교급식사업 농산물 공급업체의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마련하고 제공한다.	V				
소 계		9					XXXXXXXXXX
안전성검사	10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에 있어,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PLS 기준에 따른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V				
	11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농산물 안전성검사 장비의 최적 성능을 항시 유지한다.	V				
	12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공급업체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통중지로 인해 공급업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V				
	13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결과를 고객(학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V				
소 계		4					XXXXXXXXXX
배송	14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농산물 배송업체 모집공고는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공개적으로 고지한다.	V				
	15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농산물 배송업체 모집에 입찰참가조건 또는 제한요건을 공정하게 제시한다.	V				
	16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농산물 배송업체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선정한다.	V				

17	공사는 학교급식사업 농산물 배송업체 선정과정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의 이의제기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V					
18	공사는 선정된 학교급식사업 농산물 배송업체와의 계약 시, 계약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상호간에 협의에 의한 계약을 실시한다.	V					
19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농산물 배송업체와의 계약 체결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지 않는다.	V					
20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농산물 배송업체에 대하여 작업장 및 배송차량의 안전, 위생 등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V					
21	공사는 학교급식사업 농산물 배송업체의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마련하고 제공한다.	V					
22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농산물 배송업체에게 공정한 납품처(학교) 배분을 실시한다.	V					
23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농산물 공급업체, 납품업체, 납품처(학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계약시 적극 반영한다.	V					
24	공사는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의 문제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을 수거해야 하는 경우, 리콜 등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V					
소 계		11					
합 계		24					

▶ 분야 2. 축산물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 우 필 요	아 니 어	정 보 필 요	해 답 필 요	
수급	25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축산물 공급업체 모집공고는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공개적으로 고지한다.	V				
	26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축산물 공급업체 모집에 입찰참가조건 또는 제한요건을 공정하게 제시한다.	V				
	27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축산물 공급업체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선정한다.	V				
	28	공사는 학교급식사업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과정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의 이의제기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V				
	29	공사는 선정된 학교급식사업 축산물 공급업체와의 계약 시, 계약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상호간에 협의에 의한 계약을 실시한다.	V				
	30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축산물 공급업체와의 계약 체결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지 않는다.	V				
	31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축산물 공급가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V				
	32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축산물 공급업체에 대하여 작업장 안전, 위생 등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V				
	33	공사는 학교급식사업 축산물 공급업체의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마련하고 제공한다.	V				
소 계		9					
배송	34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축산물 배송업체 모집공고는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공개적으로 고지한다.	V				
	35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축산물 배송업체 모집에 입찰참가조건 또는 제한요건을 공정하게 제시한다.	V				
	36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축산물 배송업체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선정한다.	V				
	37	공사는 학교급식사업 축산물 배송업체 선정과정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의 이의제기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V				
	38	공사는 선정된 학교급식사업 축산물 배송업체와의 계약 시, 계약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상호간에 협의에 의한 계약을 실시한다.	V				
	39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축산물 배송업체와의 계약 체결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V				

	지연하지 않는다.						
40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축산물 배송업체에 대하여 작업장 및 배송차량의 안전, 위생 등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V					
41	공사는 학교급식사업 축산물 배송업체의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마련하고 제공한다.	V					
42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축산물 배송업체에게 공정한 납품처(학교) 배분을 실시한다.	V					
43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축산물 공급업체, 납품업체, 납품처(학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계약시 적극 반영한다.	V					
44	공사는 학교에 납품된 축산물의 문제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축산물을 수거해야 하는 경우, 리콜 등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V			납품된 축산물에 대하여 학교의 클레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리콜이 필요한 경우 이에 빠르게 대응하고 공유·전파할 수 있도록 공사 차원에서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해야 함
소 계		10		1			X
합 계		19		1			

▶ 분야 3. 수산물

항목	지표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배송	45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수산물 납품업체 모집공고는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공개적으로 고지한다.	V				
	46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수산물 납품업체 모집에 입찰참가조건 또는 제한요건을 공정하게 제시한다.	V				
	47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수산물 납품업체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선정한다.	V				
	48	공사는 학교급식사업 수산물 납품업체 선정과정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의 이의제기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V				
	49	공사는 선정된 학교급식사업 수산물 납품업체와의 계약 시, 계약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상호간에 협의에 의한 계약을 실시한다.	V				
	50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수산물 납품업체와의 계약 체결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지 않는다.	V				
	51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수산물 납품가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V				
	52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수산물 납품업체에 대하여 작업장 및 배송차량의 안전, 위생 등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V				
	53	공사는 학교급식사업 수산물 납품업체의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마련하고 제공한다.	V				
	54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수산물 납품업체에게 공정한 납품처(학교) 배분을 실시한다.	V				
	55	공사는 학교급식사업의 수산물 납품업체와 납품처(학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계약시 적극 반영한다.	V				
	56	공사는 학교에 납품된 수산물의 문제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산물을 수거해야 하는 경우, 리콜 등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V		납품된 수산물에 대하여 학교의 클레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리콜이 필요한 경우 이에 빠르게 대응하고 공유·전파할 수 있도록 공사 차원에서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해야 함
소 계		11		1			
합 계		11		1			